종사자 윤리지침



나누미방문요양센터

종사자 윤리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나누미방문요양센터**(이하 '기관'이라 함)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 장기 요양 급여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함께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를 말하며, "지침"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주는 준칙을 말한다.

제3조【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① 기관은 대상자의 권익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③ 요양보호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 경제적 학대 및 유기 · 방임 과 같은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수행과정 중 지득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요양보호사는 본인 또는 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 ·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③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대상자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제한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대상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대상자는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본인 개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기관은 대상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기관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대상자의 권리 변화, 건강 또는 일상생활의 변화, 제공 서비스의 변화 등에 대해서 사전에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기관은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기록에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⑥ 기관은 대상자나 그 가족에 의해 제기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기관은 대상자가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 ·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 및 선호를 파악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훈련 및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 경과와 결과를 기관장에게 자세하게 보고한다.

제4조【요양보호사의 태도】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에 임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및 복장·외모관리를 포함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의 태도】

1.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대상자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정신/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사회정의 실현과 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⑤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⑦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대상자에 대한 윤리

① 대상자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대상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③ 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대상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④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

해야 한다.
⑤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⑥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대상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상자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⑧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상자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⑨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상자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제6조【간호(조무)사의 태도】

1.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① 간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직 단체에서 개발한 간호실무표준에 따라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②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한 간호에 대해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③ 간호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위임하는 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무자격자에 의한 간호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보건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결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간호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간호대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⑥ 임종과정의 환자 치료 및 간호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는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 근거중심의 간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간호요법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⑧ 원만한 인간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⑨ 건강교육자로서 건강행위의 실천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⑩ 계속 학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⑪ 시·도 간호사회, 의료기관, 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⑫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과학 회 등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⑬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바람직한 간호실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공정한 근무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⑭ 전문직 단체행동에 참여할 때는 간호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⑮ 간호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자원과 사회·경제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그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⑯ 사회의 요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임하며 윤리적인 행위로 반응하되, 간호전문직 가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공동선을 지향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에 참여하여야 한다.
⑰ 간호 관련 정책의 형성과정과 입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⑱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⑲ 국가의 보건의료환경에 관한 제도나 정책의 수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2.대상자에 대한 윤리
①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을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간호대상자의 종교와 신념,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종교적 관점과 신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④ 간호대상자의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무관하게 동등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자신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여야 한다.
⑥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⑦ 간호대상자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인의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대화,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간호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의 비밀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나 가족, 보건 의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뿐 아니라 간호사가 관찰한 것, 들은 것, 이해한 것 등을 포함한다.
⑩ 인수인계와 보고 시 간호대상자의 정보가 관계자 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⑪ 간호대상자가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⑫ 간호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간호나 치료 상황을 녹음·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묵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⑬ 간호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⑭ 간호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단, 그 결정이 간호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⑮ 간호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간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⑯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이해능력 등을 고려하여 간호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⑰ 간호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건강 환경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을 때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건강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